

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잘못된 사례

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잘못임

□ 사실관계 및 과세개요

- 회사정리절차 개시일 : 2001. 3. 21
- 체납세금 납세의무성립일 : 2003. 12. 31(2003년 2기 부가가치세)
- 회사정리절차 개시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 체납세금에 대하여 청구인들(부부)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

□ 분석결과

- 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과점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제2차납세의무자 요건인 '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'에 해당되지 아니함
- 따라서 회사의 정리절차 개시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관련 예규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

〈 관련예규 및 국세심판례 등 요약 〉

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되어 과점주주는 그때부터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

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의 범위를 잘못 안 사례

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재산의 범위(2년 이내 5억원)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소명 요구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인출금에 대하여 잘못 과세

□ 사실관계 및 과세개요

-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의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
 -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간 총 인출액과 총 입금액의 차액은 △ 20백만원임

□ 분석결과

- 조사자는 피상속인의 예금출금액에 대하여만 사용처 소명요구를 하였으나, 관련법령의 미숙지 또는 적용착오에 의하여 입금액은 고려하지 않은 것임
- 피상속인은 계속사업자로서 37세라는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사용처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전상속협약이 없음에도 인출액에 대한 소명결과만을 토대로 잘못 과세한 사례임

〈 관련법령 및 국세심판례 등 요약 〉

상속개시일 2년 이내 재산처분액(총인출액-총입금액)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내지는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됨

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주택을 잘못 과세한 사례

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

□ 사실관계 및 과세개요

- 납세자는 '00. 4. 2. 상속받은 연립주택을 '03. 3. 24. 양도 후 '03. 3. 31.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,
- 납세자의 배우자가 '99. 1. 26. 아파트를 취득 후 '02. 6. 20.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1세대가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을 보유 하던 중 상속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

□ 분석결과

-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(또는 무주택자)인 납세자가 '02. 12. 31.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'04. 12. 31.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'02. 12. 30.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
- 세무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개정세법령의 부칙 중 비과세를 명시한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과세한 잘못된 처분임